

대법원 2024도99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A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턴 근무를 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991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 피고인

- 2018. 9. 7.경부터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중 2020. 3. 16. 퇴직
-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

▣ A

- 피고인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B의 아들

나. 공소사실의 요지

- ▣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안 됨
- ▣ A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한 적이 없고, B의 배우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인턴 근무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음
-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31.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A가 인턴 근무를 했고, 자신이 이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함
- ▣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통신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 유죄[벌금 80만 원]

나. 원심

- ▣ 쌍방 항소 기각
- ▣ 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피고인에게 당선될 목적도 인정됨
 -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함
 -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 ▣ 피고인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사실의 공표', '당선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 공소권 남용 여부

나. 판결 결과

- ▣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